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9. 7) 상정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9.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4. 20, 경기도)되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 변경함.

(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에 바로 적용되는 사례는 있는지?	<input type="radio"/> 현재 기준으로 당장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나 추후 법 개정으로 적용될 사례를 대비하여 개정하려고 함.
<input type="radio"/> 협동화 사업단지가 우리시에 있는지?	<input type="radio"/> 우리시에는 현재 협동화 사업단지는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9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출년월일 : 2004. 8. 2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4. 20, 경기도)되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 변경함.(안 제12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생략)</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p> <p>③(현행과 같음)</p>